

## 이천시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자치교육과

제정 1996· 3· 1 조례 제 137호  
개정 1996· 4· 27 조례 제 144호  
개정 1999· 4· 8 조례 제 276호  
개정 2000· 12· 30 조례 제 357호  
개정 2003· 2· 5 조례 제 437호  
(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)  
개정 2006· 4· 17 조례 제 613호  
개정 2009· 7· 30 조례 제 772호  
일부개정 2011· 1· 11 조례 제 878호  
(제명개정 포함)  
전부개정 2017· 3· 7 조례 제1298호  
(제명개정)  
일부개정 2018· 9· 28 조례 제1424호  
(제명개정)  
일부개정 2019· 12· 27 조례 제1557호  
일부개정 2022· 9· 30 조례 제1857호  
(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 
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 
일부개정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따라 이천시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· 9· 30>

[전문개정 2018· 9· 28]

**제2조(소재지)** 이천시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8· 9· 28]

부칙 <2017· 3· 7 조례 제1298호 전부개정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「이천시 읍·면·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읍·면·동사무소”를 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② 「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주민센터”를 각각 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③ 「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읍·면·동사무소”를 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제2호 중 “읍·면·동사무소”를 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⑤ 「이천시 주택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 중 “읍·면·동사무소”를 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⑥ 「이천시 경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공공청사의 구분란 중 “주민센터”를 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⑦ 「이천시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알림 중 “읍·면·동사무소”를 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부칙 <2018·9·28 조례 제1424호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「이천시 읍·면·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를 “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② 「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를 각각 “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③ 「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를 “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”

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제2호 중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를“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⑤ 「이천시 주택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 중“읍·면·동사무소”를 “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⑥ 「이천시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알림 중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를 “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⑦ 「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“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를 “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⑧ 「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2.공공건축물의 분류 공공청사의 세부항목 중 “다. 주민센터”를 “다.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⑨ 「이천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의 “백사면사무소”를 각각“백사면행정복지센터”로 하고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확인자란의 “백사면사무소”를 각각 “백사면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부칙 <2019·12·27 조례 제155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9·30 조례 제1857호,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

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〈개정 2019. 12. 27〉

이천시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현황  
(제2조관련)

| 기 관 명               | 소 재 지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이 천 시 청             | 부악로 40(중리동)        |
| 장 호 원 읍 행 정 복 지 센 터 | 장호원읍 서동대로 8844-6   |
| 부 발 읍 행 정 복 지 센 터   | 부발읍 무촌로 121        |
| 신 둔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 | 신둔면 경충대로 3128      |
| 백 사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 | 백사면 현방로 65         |
| 호 범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 | 호범면 이섭대천로 527번길 27 |
| 마 장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 | 마장면 오천로 107        |
| 대 월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 | 대월면 사동로 1-10       |
| 모 가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 | 모가면 진상미로 1295      |
| 설 성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 | 설성면 설장로 17번길 6-5   |
| 율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   | 율면 고당로 132         |
| 창 전 동 행 정 복 지 센 터   | 영창로 163번길 22(창전동)  |
| 증 포 동 행 정 복 지 센 터   | 증신로 156번길 15(증포동)  |
| 중 리 동 행 정 복 지 센 터   | 남천로 31(중리동)        |
| 관 고 동 행 정 복 지 센 터   | 설봉로 65(관고동)        |